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지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996

발의연월일: 2025. 2. 7.

발 의 자:조지연·엄태영·장동혁

박덕흠 • 이인선 • 권영진

최은석 · 강대식 · 김소희

김정재 · 서명옥 · 박상웅

이성권 의원 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공항안전운영기준」(국토교통부 고시)은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공항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류 등 야생동물 위험관리를 포함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항공기 이·착륙 시 발생할 수 있는 조류 충돌사고(Bird Strike)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요소임에도 불구하고, 안전점검 실시의무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한 것은 공항의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조류충돌로 인한 사고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조류 충돌사고 예방 전담 인력 및 관련 장비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56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6조의4(조류 충돌사고 예방 전담 인력 및 장비 운용) ① 공항운영 자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명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담 인력의 수는 공항 운영시간, 운영하는 활주로 의 수 등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56조의4(조류 충돌사고 예방
	전담 인력 및 장비 운용) ①
	공항운영자는 항공기와 조류의
	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
	전담 인력 및 조명탄 등 국토
	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
	<u> 운용하여야 한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전담 인력의
	수는 공항 운영시간, 운영하는
	활주로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
	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
	<u>한다.</u>